특허권의 수용・실시 등에 관한 규정 (약칭: 특허권수용규정)



[시행 2012. 1. 6.] [대통령령 제23488호, 2012. 1. 6., 타법개정]

특허청 (산업재산정책과) 042-481-8180

- 제1조(목적) 이 영은「특허법」제41조제2항 및 제4항, 제106조, 제106조의2, 제107조, 제110조, 제111조의2,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1. 30., 2010. 7. 26.> [전문개정 1990. 8. 28.]
- 제2조(처분의 신청)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「특허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6.]

- 제2조의2(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)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- 1.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
 - 2.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 된 때일 것

[본조신설 2005. 11. 30.]

제2조의3(수입국의 자격) 법 제107조제7항에서 "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"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05, 11, 30,]

- **제3조(신청서 등)**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법 제107조,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 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1987. 7. 1., 1990. 8. 28., 2005. 11. 30., 2010. 7. 26.>
 - 1.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
 - 2. 발명의 명칭
 - 3.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)
 - 4.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・전용실시권자・통상실시권자・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
 - 5. 신청내용의 표시
 - 6. 신청의 취지 및 이유
 - 7.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
 - 8. 통상실시권의 범위(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
 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05. 11. 30.>
 - 1. 보상금 또는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
 - 2. 신청 또는 청구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
 - 3.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(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한한다). 다만, 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.<신설 2005. 11. 30.>
- ④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,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,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(이하 이 조에서 "수입국"이라 한다)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 <신설 2005. 11. 30.>
- 1.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
- 2.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
- 3. 의약품이 수입국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
- 4. 법 제107조제7항에 따라 통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
- 5. 법 제1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 ·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(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. 이하 같다)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 · 표시 및 특징을 명시한 서류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. 다만, 특허권자 ·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 · 표시가 불가능하거나, 구분하기 위한 포장 · 표시가 그 의약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신설 2005. 11. 30.>
- 1. 재정을 받은 특허번호
- 2. 재정을 받은 발명의 명칭
- 3.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ㆍ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)
- 4. 특허권자・전용실시권자・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
- 5. 청구내용의 표시
- 6. 청구의 취지 및 이유
- 7. 재정서의 변경이 필요한 원인 및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
- ⑥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05. 11. 30., 2010. 7. 26.>

[제목개정 2005. 11. 30.]

- 제4조(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) ①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· 전용실시권자 · 통상실시권자 · 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1978. 7. 26., 1987. 7. 1.>
 -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1978. 7. 26.>
 - ③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1987. 7. 1., 1990. 8. 28.>
 - ④ 삭제<1987. 7. 1.>
- **제5조(보상금액의 결정 등)** ①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1978. 7. 26., 1987. 7. 1., 1990. 8. 28., 2010. 7. 26.>
 -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이나 대가도 제5조의2의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7. 26.>
 -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·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·전용실 시권자·통상실시권자·질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.<개정 1978. 7. 26., 1987. 7. 1., 1990. 8. 28., 2005. 11. 30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「발명진흥법」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, 보상금이나 대가의 결정에 그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.<개정 2010. 7. 26.>

[제목개정 2010. 7. 26.]

제5조의2(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)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
- 1.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총액
- 2. 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
-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.
-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= 총판매예정수량 × 제품의 판매단가 × 점유율 × 기본율
-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, 제품의 판매단가,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총판매예정수량: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
- 2. 제품의 판매단가: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
- 3. 점유율: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
- 4. 기본율: 3퍼센트. 다만,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.
-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. 다만,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.

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= 제품의 판매단가 x 점유율 x 기본율

[본조신설 2010. 7. 26.]

제6조(특허발명 불실시) ①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1987. 7. 1., 1990. 8. 28.>

- 1.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. 다만,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.
- 2.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·인가·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허가·인가 ·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
- 3. 특허발명의 실시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
- 4.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
- 5.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
- ②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 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.

제7조(처분의 결정서)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1987. 7. 1, 1990. 8. 28, 2005. 11. 30.>

- 1. 결정의 번호
- 2.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・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)
- 3.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・전용실시권자・통상실시권자・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
- 4. 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
- 5. 결정의 주문(보상금 및 대가를 포함한다)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6. 결정의 이유(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)
- 7. 결정 연월일
- 8. 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

제8조(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)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 ·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· 전용실시권자 · 통상실시권자 · 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1978. 7. 26.>

제9조(신청의 예외 등) ① 특허청장은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당시 국도의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어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(이하 이 조에서 "서류등"이라 한다)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허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서류 등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서류등이 보완된 때를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로 본다.

-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등이 보완되기 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처분의 결정서에는 같은 조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제1항에 해당하여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특허청장이 인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기재할수 있고, 제8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서류등이 보완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에 대하여 제4조, 제5조,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0. 7. 26.]

제10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특허청장은 이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2. 1. 6.]

제11조 삭제 <2001. 6. 27.>

제12조 삭제 <2001. 6. 27.>

제13조 삭제 <2001. 6. 27.>

제14조 삭제 <2001. 6. 27.>

제15조 삭제 <2001. 6. 27.>

제16조 삭제 <2001. 6. 27.>

제17조 삭제 <2001. 6. 27.>

제18조 삭제 <2001. 6. 27.>

제19조(준용)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01. 6. 27,, 2005. 6. 30.>

부칙 <제23488호,2012. 1. 6.>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**제2조** 생략